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여명준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55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타이어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하 피고와 같이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직영 매장',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가맹점 매장'이라 하고, 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을 통틀어 '피고 매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9.경 이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2010. 7.경 주식회사 ◇◇◇으로 변경,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2010. 7.경 이전 및 2011. 3.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함께 가리킬 때는 '소외 1 회사 등'이라 한다)에 각각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소외 1 회사 등이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회사는 2010. 1.경, 소외 2 회사는 2010. 7.경 이전 및 2011. 5. 17.경 피고와, 소외 1 회사 등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1 회사 등은 2009. 9. 무렵부터 2016. 9. 무렵까지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에 음원파일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소외 1 회사 등에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 이

용내역에 따라 이용료를 정산해 주었다.

마. 피고 등은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 중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이라 한다)을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의 제1 상고이유)

1)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의 제2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 1 회사 등과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공연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한 자는 저작물의 공연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가맹점 매장은 피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 할 것이다. 따라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연 자체의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3) 원심은 공연의 주체가 아닌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의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피고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가맹점사업자의 모집·관리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다. 따라서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에게 그 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을 용이하게 한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살펴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와 더불어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와 그것이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